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4. 9. 19.(목) 11:00 이후(9. 20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9. 19.(목)

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위한 「공항시설법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진다.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박상우, 이하 국토부)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(미탑승 승객) 항공권에 포함된 **여객공항사용료***를 **환급** 받을 수 있도록 **공항시설법 개정안**을 마련하여 **40일간 입법예고**(9.20~10.30) 한다.

* (국제선) 인천, 김포 1.7만원, 그 외 1.2만원 / (국내선) 인천 5천원, 그 외 4천원

○ 현재 **공항시설법령상** 양 **공항공사**(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)는 **'공항을 이용한 자'**에게만 **여객공항사용료**를 **징수**할 수 있으며 **항공사**가 이를 **징수 대행**하고 있는 상황이다.

○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, **여객공항사용료 환급**을 **청구**할 수 있는 **공항시설법상 권한**이 없어 **항공사 잡수익**으로 **관리***되고 있다.

* 미탑승객의 경우,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

□ 이에 따라 마련된 **개정안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**5년간**(탑승 예정일 기준) **여객공항사용료**를 **환급 청구**할 수 있는 **권한**을 부여한다.

○ 아울러,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**해당 사실**을 **안내**하도록 **제도**도 마련한다.

○ **5년간 여객공항사용료**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, **공익 목적**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**교통시설특별회계**의 **공항계정**에 **귀속 조치**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“**입법예고**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**의견**을 두루 **수렴**할 예정이며,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**미사용**한 **여객공항사용료**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”고 하면서,

○ “아울러,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**여객공항사용료** 외 **출국납부금**(1만원, 관광진흥개발기금법)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**문체부**에서도 **입법 추진 중**에 있어, **양부처**가 **적극 공조**해 **제도화**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**국토교통부 누리집**(www.molit.go.kr)의 “정책자료 – 법령정보 – 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**의견을 제출**할 수 있다.

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

담당 부서	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 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소지섭 (044-201-4189)
			주무관	이명곤 (044-201-419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